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 지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 세부 지원기준 및 방법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원대상자 (안 제2조)
 -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
-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급, 지원방법 (안 제3조~제5조)
 -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 관리, 기타(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6, FAX : 3396-8730, E-mail : js903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018.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1.6.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과 그 유족(개정 2011.6.7)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개정 2011.6.7)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개정 2011.6.7., 2018.12.28.>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 지원<개정 2018.12.28.>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